



제 438회 (임시회)
제 2차 정무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행위 추가〉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170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행위 추가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학영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2. 27.
3. 회 부 일 : 2026. 3.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 또는 벌칙을 부과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50조의2제5항).

Ⅲ. 검토의견: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행위 추가

☐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행위에 ‘제3자에 대한 이익 제공 목적’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제5항).

현행	개정안
제50조의2(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의2(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⑤ ----- ----- ----- ----- -----취 할 목적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제 공할 목적으로-----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¹⁾가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회사의 이익에 반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1)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함(「여신전문
금융업법」 제2조제17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나. 다음 각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의 임면(任免) 등의 방법으로 금융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참고로, 동 규정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주주의 사금고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되었고³⁾,

현행법 제49조의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및 제50조(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⁴⁾는 여신전문회사가 그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음.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2(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에 따라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6(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법 제50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금리, 수수료, 담보에 관하여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 또는 제3자와 거래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5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3) 「법률 제8525호 여신전문금융업법」(2008 1. 20. 시행) 개정이유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그 한도를 넘겨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⑧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런데, 현행법은 ‘대주주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는 제재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 개정안은 대주주 본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인사·경영 등에 개입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입법방향으로 보임.

참고로, 2018년 제정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⁵⁾은 대주주 본인의 이익 또는 제3자의 이익 여부와 관계

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는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 및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신용공여를 조기 회수하도록 요구하는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4.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하여금 제8조제1항을 위반하게 하여 인터넷전문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5.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하여금 제8조제2항을 위반하게 하여 다른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6.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하여금 제8조제3항을 위반하게 하여 대주주에게 자산의 무상양도 및 거래를 하게 하는 행위
7.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하여금 제9조제1항을 위반하게 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제20조(과징금)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를 위반하거나 대주주가 제1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6. 대주주가 제10조를 위반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이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이하

7. 대주주가 제10조를 위반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이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무상양도하거나 인터넷전문은행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한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해당 거래액 이하

8. 대주주가 제10조를 위반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이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지분증권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제2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조를 위반한 자

없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및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다만,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금지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등 다른 금융관계 법률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규정들은 여전히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 제재 수준도 상이하므로, 동 개정안 의결 시에는 다른 금융관계 법률과의 형평성 및 법체계의 일관성 등을 고려해 다른 법률의 개정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관련 금융 관계 법률 비교>

법률	의무주체	금지행위	제재
금융지주회사법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제34조),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제45조의4)	해당 금융회사의 이익에 반해 본인의 이익 을 취할 목적으로 부 당한 영향력 행사	10년이하 징역/ 5억원이하 벌금, 과징금
은행법	대주주 (제35조의4)		10년이하 징역/ 5억원이하 벌금, 과징금
상호저축은행법	대주주 (제12조의3)		10년이하 징역/ 5억원이하 벌금
여신전문금융업법	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제50조의2)		7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보험업법	대주주 (제111조)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과징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제35조)	해당 금융회사의 이익 에 반해 부당한 영향 력 행사	5년이하 징역/ 2억원이하 벌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대주주 (제10조)		10년이하 징역/ 5억원이하 벌금, 과징금

□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금융업권별 처벌수준
의 형평성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113
